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2204.10)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계약번호	52215612090000
계약자	(이름) 만민의집 (305-82-77579) (주소) (사업장) 대전 대덕구 장동로 233-13 (장동)
보험기간	2022.07.07 ~ 2032.07.07 (10년)
청약일	2022.07.07
1회 보험료	105,820원(월납)[기본:6,546원 + 특약:99,274원](할인후보험료: 104,761원)

보장내용 건물(1/1)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담보별 보장내용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대물 1사고당)	10년납 10년만기	1,000,000,000	930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150,000,000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부상 1인당)		30,000,000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부상 또는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보험금 지급※ 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한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함
화재손해(건물(실손))	10년납 10년만기	108,000,000	5,616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및 주택 내 수용가재일 경우에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보상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1사고당)	10년납 10년만기	300,000,000	26,118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1인당)		30,000,00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공제]자기부담금(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1,000,000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0만원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10년납 10년만기	100,000,000	73,156	피보험자가 사회복지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발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공제]자기부담금(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500,000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50만원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2204.10)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계약번호	52215612090000
계약자	(이름) 만민익집 (305-82-77579) (주소) (사업장) 대전 대덕구 장동로 233-13 (장동)
보험기간	2022.07.07 ~ 2032.07.07 (10년)
청약일	2022.07.07
1회 보험료	105,820원(월납) [기본:6,546원 + 특약:99,274원] (할인후보험료: 104,761원)

◆ 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피보험대상

보장사항

구분	내용
건물(1/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만민익집 (305-82-77579)
소재지	34345 대전 대덕구 장동로 233-13 (장동)
목적물업종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등)
요율적용업종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등)
수용장소	충권상 표기된 건물내 분산수용함 지상2층 총면적141.54㎡가입건 건물내 분산수용함 1층은 주야간보호로사 용중 *요양보호시설 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적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주소	(사업장) 34345 대전 대덕구 장동로 233-13 (장동)
건물구조급수	1급
건물구조	콘크리트조/슬라브조/콘크리트외벽
가입면적 (㎡)	141
층수(지상)	2
층수(지하)	0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부담보특약	선택 안함
화재손해부담보특약	선택 안함
특수건물여부	선택 안함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 대상여부	선택 안함
복합구조건물대상여부	선택 안함
요양시설업종구분코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시설수용인원수	0000000009
시설전문인수	4
만기(중도)금 수익자	계약자본인

구분	납입/보험기간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기본]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II (대물 1사고당)	10년납 10년만기	1,000,000,000	930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II (사망및후유장해 1인당)		150,000,000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 II (부상 1인당)		30,000,000	
화재손해(건물(실손))	10년납 10년만기	108,000,000	5,616
[특약]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1사고당)	10년납 10년만기	300,000,000	26,118
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1인당)		30,000,000	
[공제]자기부담금(노인요양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1,000,000	
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10년납 10년만기	100,000,000	73,156
[공제]자기부담금(노인요양시설 전문인 배상책임)		500,000	

◆ 보험증권은 계약체결의 증거로 발행되는 것이며, 실제 계약내용은 보험계약청약서 및 보험약관에 따릅니다.

- ◆ 이 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임의단체 제외)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서 주요 내용 작성시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않았거나 자필 서명을 본인인 직접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실손(보상)이란, 교체비용이나 수리복구비용을 감가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이라도 비례보상을 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담보)을 말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많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